

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모집 공고



2025년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
2025년 9월 24일

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

① 개요

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사기, 횡령 등 재산범죄와 의료, 명예훼손, 임금체불 등 일정한 고소사건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하도록 조정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형사조정위원회를 설치 · 운용하고 있습니다.

사명감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활동하실 분을 모시고자 아래와 같이 신규위원을 위촉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② 지원자격

○ 변호사, 법무사, 공인노무사 등을 비롯한 형사조정에 필요한 조정능력 및 법적지식 등의 전문성과 학식 · 덕망을 갖춘 사람

※ 결격사항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- 비리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

③ 모집인원 및 활동기간

- 모집인원 : 00명
- 활동기간 : 2025. 11. 10. ~ 2027. 11. 9. (위촉일로부터 2년)

④ 지원방법

- 접수기간 : 2025. 9. 24.(수) 09:00 ~ 2025. 10. 10.(금) 18:00
- 제출서류

-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지원서 1부
- ② 자격증명서 1부
- ③ 경력증명서 1부
- ④ 최종학력증명서 1부
- ⑤ 주민등록등본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중 한 가지
- 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

※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형사조정위원 위촉 취소

- 지원방법

- 2025. 10. 10.(금)까지 서울중앙지검에 ① 방문 ②이메일 ③등기우편 송부
 - ※ 이메일 또는 우편 송부 후 유선으로 접수 여부 확인 요망(연락처 : ☎ 02-530-4601, 우편은 마감일 18:00 도착분까지만 접수 인정 (2025. 10. 10. 임시공휴일 지정시 2025. 10. 13. 18:00 도착분까지 접수 인정))
 - ※ 형사조정위원 지원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이메일 송부할 때에는 필히 위 문건에 서명하신 후 스캔하여 파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제출장소 및 우편주소 :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742호 피해자지원과 우)137-741, 전화 : 02) 530-4601
- 이메일 주소 : lmp950429@spo.go.kr

5 선정방법

- 서류심사 및 개별통지

6 활동내용

- 형사조정위원으로서 지정된 형사사건의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의 형사적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
- 월 1~3회 오전 또는 오후 각 2~4시간 근무
- 형사조정 참여 수당 지급
 - ※ 붙임 '형사조정위원회 개요' 참조

7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분의 지원서는 모두 폐기할 예정입니다.

8 기타 문의할 사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과 이민범 수사관 (☎ 02-530-4601)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.

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지원서

성명	(한글)	직업 (직장명)		사진
	(한자)	전화 번호	자택	
주민등록번호	직장			
	휴대폰			
E-mail	fax			
주소	거주지) 회사)			
학력	기간		학교명	
주요 경력	근무지	기간	직위	
상별 사항	년 월 일	내용		
자격증				
지원 동기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- 형사조정위원으로 적합한 이유 등을 기재			

2025년 9월 일

지원자

(인)

개인정보제공 동의서

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형사조정위원 위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(1)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

형사조정위원 위촉 관련임

(2) 개인정보 수집 항목

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

(3)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
보존사유 : 형사조정위원 위촉 및 관리

보존기간 : 위촉일로부터 2년

보존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제5조

(4)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거부 시 형사조정위원 위촉 제한 사유가 됩니다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

동의하지 않음

2.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형사조정위원 위촉을 위해 개인정보(고유식별정보)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(1)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

형사조정위원 위촉 관련임

(2)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

주민등록번호

(3)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
보존사유 : 형사조정위원 위촉 및 관리

보존기간 : 위촉일로부터 2년

보존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18, 23, 24조, 시행령 제18, 19조

(4)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거부 시 형사조정위원 위촉 제한 사유가 됩니다

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

동의하지 않음

3.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형사조정위원 위촉을 위해 개인정보(민감정보)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(1)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

형사조정위원 위촉 관련임

(2) 민감정보 수집 항목

범죄경력정보 등

(3)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
○ 보존사유 : 형사조정위원 위촉 및 관리

○ 보존기간 : 위촉일로부터 2년

○ 보존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15, 17조

(4)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거부 시 형사조정위원 위촉 제한 사유가 됩니다

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

동의하지 않음

2025 . 9 . .

성명

(인)

[붙임]

형사조정위원회 개요

1. 설치 목적

피의자 및 범죄피해자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함

2. 위원회 운영개요

○ 위원회의 구성

-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
- 매월 형사조정위원회의 개별 조정위원의 근무일자 지정

○ 조정 대상

- 차용금, 공사대금,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, 횡령,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
- 개인 간의 명예훼손 · 모욕, 경계침범, 지식재산권 침해, 의료분쟁,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
-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

○ 조정 절차

- 주임검사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형사조정 의뢰
-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소환
- 조정기간인 3개월 이내에 주임검사에게 그 결과 통보

○ 조정의 효력

- 주임검사는 형사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형사사건 처리
※ 공소권 없음, 기소유예 등 불기소, 기소 시 양형 사유로 반영

3. 위원의 자격 및 의무

○ 위원의 자격

- 형사조정에 필요한 조정능력 및 법적지식 등의 전문성과 학식·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검찰청의 장이 미리 위촉하는 사람
- 형사조정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(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비리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)

○ 위원의 임기

- 위촉일로부터 2년
- 직무상 의무위반 등 형사조정위원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는 등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

○ 위원의 의무

-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 금지
※ 조정 참가시 소정의 수당 지급 ■